



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

## 협약서

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 
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 
다음과 같이 상호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 
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본 협약에 의한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협력내용

- ① 영유아·부모 안전을 위한 '초록우산 스쿨' 교육 지원
- ② 영유아·부모 안전을 위한 교육 자료 및 가이드 제공

나.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내용

- ① 영유아·부모 안전을 위한 '초록우산 스쿨' 교육 홍보
- 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유아·부모 안전 교육  
진행 협력

다.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력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명시되지 않은  
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.

**제3조(협력기간)** 본 협약은 양자 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 
협의 하에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
### 제4조(비밀유지)

① "초록우산 어린이재단"과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는 협약기간 및 협약의 종료  
후에도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노하우, 지적재  
산, 대상자 관련 정보, 기밀서류, 전자문서 등의 모든 정보 및 사실(이하 "비밀정  
보"라 함)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 또  
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### 제5조(해지)

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쌍방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- ②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희망하여 상대방에게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  
으로 통지한 경우

### 제6조(효력)

이 협약의 효력은 "초록우산 어린이재단"과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가 협약서에 서  
명한 때로부터 발생한다.

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"초록우산 어린이재단"과  
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8월 17일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
센터장 마미정  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

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
회장 이재훈  
서울특별시 종로구 무교동 95

